

#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12.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④(생략)</p>	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12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a href="#">13. Ae클래스 수익증권 :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a></u>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12.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~⑤(생략)</p>	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12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a href="#">13. Ae클래스 수익증권</a></u></p> <p>②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0조(보수)</b>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5.(생략)</p>	<p><b>제40조(보수)</b>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5.(현행과 같음)</p>

<p>6. S클래스 수익증권 가. (생략)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5</u> 다.·라. (생략) 7.·8.(생략) 9. S-P클래스 수익증권 가. (생략)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0</u> 다.·라. (생략) 10.~12.(생략) &lt;신설&gt;</p>	<p>6. S클래스 수익증권 가. (현행과 같음)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5</u> 다.·라. (현행과 같음) 7.·8.(현행과 같음) 9. S-P클래스 수익증권 가. (현행과 같음)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2</u> 다.·라. (현행과 같음) 10.~12.(현행과 같음) <u>13. Ae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1.5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5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7</u></p>
<p><b>제41조(판매수수료)</b> ①(생략)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(생략) ③~⑤(생략)</p>	<p><b>제41조(판매수수료)</b> ①(현행과 같음)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(현행과 같음) <u>2. Ae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00분의 0.4 이내</u> ③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